

한국의 지적자산 가치평가제도

한국기술혁신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11. 30.

서울대

설성수

한남대 경제과/하이테크비즈니스학과

s.s.seol@mail.hannam.ac.kr

한국의 지적자산 가치평가제도

I. 서설

○ 최근 들어 지적인 자산 일반을 칭하는 기술은 점차 한 국가의 중요 성장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9-2000년의 벤처열풍에 따라 국가 전체에서 미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자산의 발굴과 이전이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 그런데 최근의 사회적인 대응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변화에 무언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응은 지식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산업사회적인 대응이라 일컬을 수도 있다. 기술은 기계설비로 대표되는 과거의 제조업형 기술에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형, 나아가 지식의존적인 무형의 기술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심지어 패션, 디자인, 캐릭터 등 문화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 지식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관련된 연구는 지식활동론(설성수, 송충한, 2000, 참조), Kaplan과 Norton(1992)의 Balanced Score Card와 같은 기업의 지적자본 혹은 지식자산 연구(소훈, 2001 참조), 이러한 자산의 회계나 가치평가(설성수, 2000; 2001나; 이기호, 설성수, 근간, 참조)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

○ 그런데 소프트형이나 무형의 기술 혹은 지적자산들은 관찰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성장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산들의 창출과 활용이 촉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본고는 가치평가가 이러한 자산의 인식을 촉진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창출과 활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현재의 사회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먼저 이러한 기술이나 지적창조물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산업의 변화추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가치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검토한다. 이어

지적재산권이나 기술평가와 관련된 법과 가치평가 관련 법, 가치평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회계(social accounting) 기준들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제도를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과학기술과 산업의 변화

1. 과학기술 수준

- 최근의 과학기술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과학화와 과학주도혁신이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지적활동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관찰된다. (설성수, 2001가)
- 그에 따라 기술혁신의 패턴도 공학형에서 과학형으로 변하고 있다. IT, BT, NT등이 대표적인 과학주도형 기술혁신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과학화가 절대적인 양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약화되고 있다.

<표 1> 1990년대 한국의 과학화 동향

	자체 기준			Grupp(1992) 기준			
	1991	1999	증가율%	1991	1999	증가율%	
소계	6,063	44,135	628	소계	4,731	35,530	651
(%)	(49.0)	(46.4)		(%)	(38.3)	(37.3)	
전체	12,365	95,108	669	전체	12,365	95,108	669

자료: 설성수(2001가)

2. 기업 수준

○ 1990년대의 특징 중의 하나가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 현재 10대 기업에 기술기업이 하나도 없었으나 2000년에는 6개가 포함되었다. 한국의 KOSDAQ에서도 IT기업만 55%이며 대조적인 제조업은 25%에 불과하다.

○ 기업의 자산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다. 유동자산, 고정자산의 구분에서 무형자산을 강조하는 구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도 무형자산 자체보다 그 원천을 중시하여 무형자산을 지적자본, 관계자본, 구조자본, 인적자본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표 2> 업종별 지적자본의 비중 (2000. 4.)

	e-bay	Pfizer	Merrill Lynch
업종	사이버경매	제약	금융
시장가치	235억\$	1532억\$	381억\$
자산구성(%)	유형자산 3.4 관계자본 86.9 인적/구조자본 9.7	유형자산 5.8 구조자본 75.4 인적/관계자본 18.8	유형자산 22.6 인적/구조자본 50.5 관계자본 16.9

Sawhney, Gulati & Paoni(2001)

○ Sawhney, Gulati & Paoni(2001)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초 현재 경매회사 e-bay의 가치는 유형자산 3.4%, 관계자본 86.9%, 인적자본과 구조자본이 9.7%에 달한다. 제약사 화이자의 가치는 유형자산 5.8%, 구조자본 75.4%, 인적자본과 관계자본 18.8%에 달한다. 한편 금융기관 메릴린치는 유형자산 22.6%, 인적자본과 구조자본 50.5%, 관계자본 16.9%로 측정되기도 한다.

3. 산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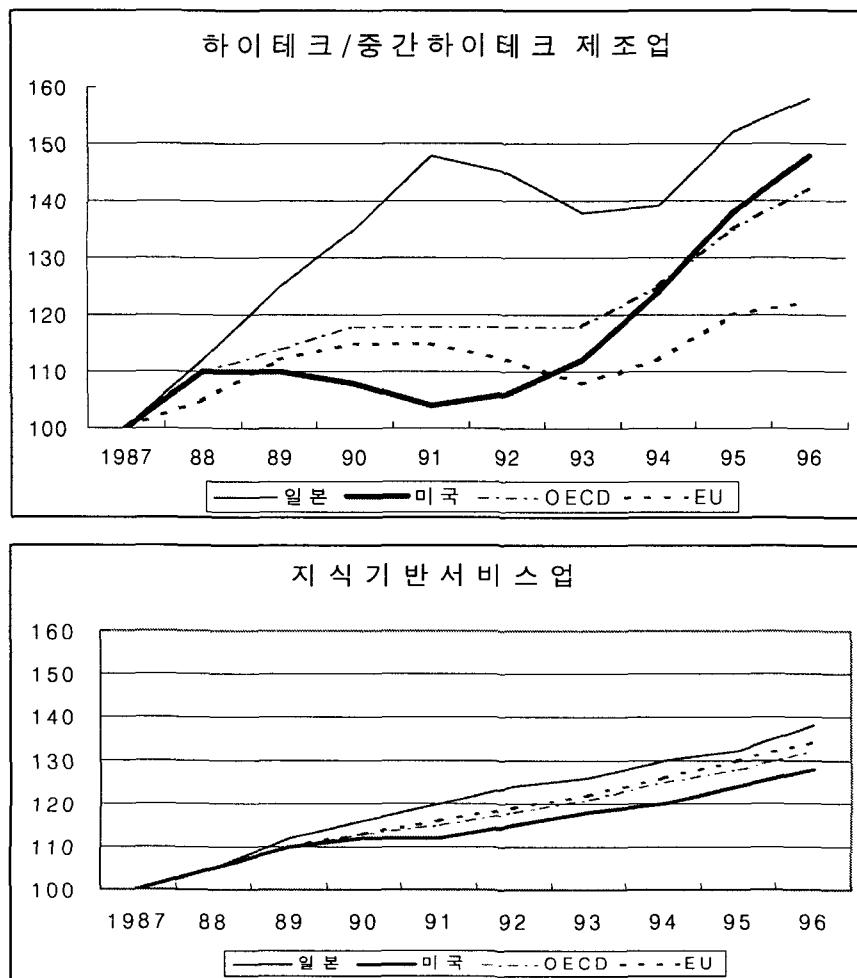
○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식기반산업이 주요 선진국 모두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과학화나 과학주도혁신의 산업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 지식기반제조업은 역시 하이테크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IT, BT, NT 등의 기술산업이 이를 뒷받침한다.

○ 그간 무시되어온 서비스업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한 성장 축이 되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교육, 의료보건과 사업서비스업 등이 새로운 성장원천을 추구할 대상이라 할 것이다.

○ 지식이 기반이 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등장하며 제조업으로 부르기도 힘들고 서비스업으로 부르기도 힘든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애니메이션 등과 각종 소프트웨어산업, 영상물 비디오물 게임 등과 같은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이 새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통적인 문화용품까지 새로운 형태의 상품과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1>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자료: OECD(1999) 주: 실질부가가치(1987=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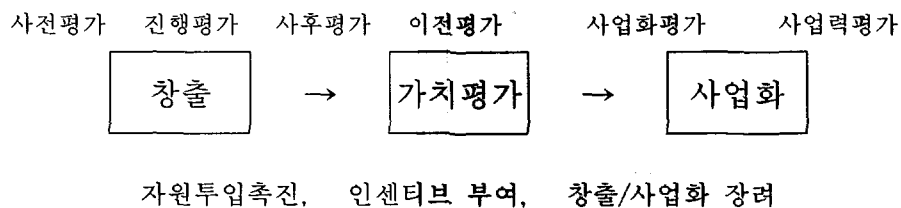
4. 지식자산 가치평가의 의미

○ 기술과 광의의 무형자산 혹은 이들을 총칭하는 지식자산의 창출과 활용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장원천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 지식자산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생명이다. 제조업형 기술이나 상품과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형이 아니라 하나 하나가 별개로 취급되는 기술과 상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과 상품 및 산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은 모두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형식이다.
-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선결과제이다.
- 우수한 지식자산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 제공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이러한 분야에 진입하여 매진할 것이다.

<그림 2> 지식자산 가치평가의 구조와 역할



III. 기술 및 지식자산 가치평가법

1. 지적재산권 및 기술평가 관련법의 문제

○ 지적재산권 및 기술평가 관련법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적기술 관련 및 사회적 기술 관련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사적기술 관련법은 다시 전통적인 기술 관련법과 소프트형기술 관련법 및 기술사업 관련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프트형기술에는 소프트형 기술과 무형의 기술이 포함된다.

○ 지적재산권 관련법에서는 기술의 범주를 유형의 기술에서 소프트형기술 나아가 무형의 기술까지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권리의 침해액 계산에 대해

약간만 언급하고 있다.

- 우선 권리 침해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방어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고,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지적재산권의 창출을 촉진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방어형 법이지 적극적인 법이 아니다.
- 또한 침해에 대한 몇가지 방법이 제시되어도 실제로 가치평가의 원칙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침해액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논자에 따라 대단히 다르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유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다.

<표 3> 기술평가 관련법

구분	소구분	해당 법	가치평가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계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영업비밀보호법	피해액 중심
	저작권계	저작권법, 컴퓨터S/W보호법, 반도체회로설계법	
사적기술 관련	전통 기술	과학기술혁신특별법, 기술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산업기반기술조성법, 정보화촉진기본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없음
		기술이전촉진법	단어만 존재
	소프트웨어기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각종 단가
		산업디자인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문화관련법 등	없음
기술사업	발명진흥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없음	
사회적기술 관련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진흥법,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등	

○ 기술평가 관련법에서는 일단 기술인식의 범주가 좁은 점, 기술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는 점, 기술을 개별자산으로만 인식하는 점 등이 문제라 할 것이다.

- 기술평가법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형 기술 혹은 공학형 기술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관련법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문화산업 관련법에서는 문화기술을 언급하고 있으나 어디에서고 종합적으로 기술을 언급하고 있는 법은 없다.
-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기술이전법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가치인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 기술을 지나치게 개별자산으로 보려는 시도만이 존재한다. 기술은, 특히 무형

의 기술이라면 기업활동과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표 4> 가치평가 관련 법규

구분	관련법	적용 기준	평가대상
상법	상법, 상법시행법	법 자체	전 자산, 평가원칙
회계감사법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기업회계기준	전 분야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유가증권
기타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자산재평가법 ¹⁾ 등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목적
지가토지법	지가공시및토지평가법	감정평가규칙	토지, 유형자산
조세법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 조세조정세법 등	법	분야별 조세

2. 가치평가 관련법의 문제

○ 가치평가 관련법은 상법계, 상법의 특별법, 회계감사법계, 조세법계, 증권거래법, 토지평가법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법들은 자체적인 가치평가 규정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이나 감정평가기준 나아가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상법이나 동법시행법에서는 자산에 대한 규정과 자산의 가치평가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 회계감사법계에서는 가치평가 관련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회계와 가치평가를 언급하는 기업회계기준이 규정되고 있다.
- 기타 상관계법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가치평가 관련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직접규정과 함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조세법에서는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등에 조세와 관련되어 직접 적용되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 토지법계에서는 대표적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일부 자체 규정과 감정평가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 가치평가 관련법에서도 개별자산으로 보자면 기술 중심의 무형자산, 기업에 속한 자산으로 보자면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규정들이 없거나 미흡하다.

IV. 사회적 회계기준과 관련 전문가

1. 사회적 회계기준

○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 기준이란 법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위임되어 모든 사람이 지키는 사회적인 회계의 기준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이 대표적이며 감정평가규칙, 유가증권관련규정 및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이 있다. 1)

1)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은 과거의 실적에 기반한 재무보고라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평가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형자산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치가 보고되지만 회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은 존재 목적상 신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자산 등의 적극적인 인식이나 창출 독려 등의 의도도 없다. 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무형자산의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우선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특정기업에 한정되고 다른 유형자산과 결합되어 가치를 가지며, 다른 기업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어렵다.
- 원래 보고된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지, 혹은 다른 신규자산에 의해 대체되는 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도 갖고 있다.
- 또 취득된 무형자산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고,
- 경영자가 추가방어를 위하여 조작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문제도 있다.

2) 감정평가규칙

1) 선진국과 한국의 회계기준과 가치평가기준의 비교는 이기호, 설성수(근간) 참조.

○ 감정평가규칙은 국내에서는 부동산의 가치평가에서 출발한 감정평가기준이다. 현재는 부동산 외에도 기계설비, 일부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식자산, 기술 등의 새로운 자산의 가치평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술기업의 가치평가도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2001년 3월의 감정평가규칙 개정안에는 이러한 자산을 추가시키고, 기업의 가치평가까지를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없기에 지공법에 근거한 감정평가규칙에서 이를 다루려 하는 것이다.

3) 유가증권 관련규정

○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은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가 사회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 이 규정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금융자산에 대한 법이다. 자산을 유형자산,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자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법인 것이다.

4)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

○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은 2000년 (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가치평가기준이다. 또한 이 기준은 아직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성수, 2001나, 참조)

○ 이 기준은 기술과 기술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이들은 기술을 유형과 소프트형 및 무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적자산의 가치평가에 가장 적합한 기준이다.

2. 관련 전문가

○ 가치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기술사가 있다. 그러나 기술이나 지식재산과 관련한 가치평가 전문가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 변호사는 모든 분야에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회계사는 가치평가에 가장 적합하나 회계 자체의 고유 속성에 의해 가치평가 자체가 어렵고, 기술이나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나 가능하다.
-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및 공장 등 유형자산의 평가가 주 영역이나 어업권 광업권 등의 일부 무형자산과 일부 주식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술이나 지식재산 및 기업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감정평가기구에서도 유형자산의 가치평가와 무형자산이나 기업의 가치평가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액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으나 침해액 계산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법론은 없다. 또한 침해액 계산과 지식재산이나 지식기업의 가치평가는 사실상 다른 영역이다.
- 기술사는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분야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도 기술 전반의 문제나 가치평가와는 관계가 없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이나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문의한이라 할 것이다.
-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나 가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다.

<표 5> 각 전문가의 직무

자 격 증	내 용	독립법
변 리 사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과 감정 기타의 사무	유
변 호 사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	유
공인회계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및 세무대리	유
감정평가사	토지등을 감정평가	무
기술거래사	기술이전/사업화 상담·자문 및 지도와 기술의 매매업무	무
경영/기술지도사	경영 관련 제반사항, 혹은 기술의 진단지도 관련 모든 사항	무

V. 결어

1. 요약

- 한국은 기술이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과학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90년대에 감소하고 있다.
 -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개념이 아직도 제조업형이다.
 - 기술 개념이 아직도 독립된 자산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제조업형 기술에서는 그리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과학과 기술 및 산업이 융합되고 있는 과학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식자산은 비즈니스를 전제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제도가 없다.
 - 가치평가 관련법에서도 지식자산의 가치평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다. 상법 및 상법관련법들이나 조세법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항은 없다.
 - 기술평가법에서도, 심지어 지적재산권법에서도 지식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원칙이나 방법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소프트형, 문화형 기술에서는 가치평가에 관한 단어조차 없다.
 - 사회적인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 감정평가기준 및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도 지식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은 없거나 부족하다.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과 기술거래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각종 전문가들도 기술이나 지적자산의 가치평가와는 무관하다.

2. 정책적인 합의

1) 기본 전제

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식자산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치평가는 직접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간접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것이다.

□ 가치평가는 기업회계나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회적인 회계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 과학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반영할 때 기술정책에 있어서 유형의 기술, 소프트형 기술 나아가 무형의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개념이 어딘가에는 정책화되어 있어야 한다.

2) 방향

□ 기술 관련 법 어디에선가 기술개념을 확대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기술개념은 유형과 소프트형, 나아가 무형의 기술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 기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비즈니스활동과 동일 선상에서 혹은 비즈니스활동 내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 지식자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법조항이 지식자산과 관련된 법에 추가되거나 신설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법은 가치평가 자체의 법보다 지식자산이나 비즈니스와 밀접한 법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
-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에 법에 규정하기 보다 회계기준이나 감정평가규칙 혹은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과 같은 수준이 되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가치평가기준은 정부기구의 책임이지만 제정은 다른 사회적 기준과 같이 민간전문가들에 위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지식자산 전체를 위한 가치평가는 다르다. 기술거래를 위한 가치평가는 지식자산 전체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한 부분일 뿐이다. 지식자산의 가치평가 혹은 쉬운 표현으로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과 지식자산의 사업화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평가대상에 있어서 거래용 기술은 인적자본, 지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

- 등과 이들의 법적인 권리인 지적재산권이라는 지식자산의 부분에 불과하다.
- 용도에 있어서 거래용 가치평가는 투자용, 여신용, 재무보고용, 합병용, 분할용, 파산용, 조세용 등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또한 용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전이 아니라 기술사업화이어야 한다.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사업화 전체가 중요하다는 점이 전제한다면, 기술이전, 벤처인증, 벤처투자, M&A 등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가치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종합조정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설성수 (2000), “기술가치평가의 개념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3-2호, 1-13.
- _____ (2000가), “과학기술기반산업의 속성과 논점”, 기술혁신학회지, 4-1, 2001. 3.
- _____ (2001나),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의 철학과 구조”, 『기술혁신학회지』, 4-2호, 182-197.
- 설성수, 송충한 (2000), 『지식활동분류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 출판부, 12.
- 설성수 외 (2000),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 2000, 경문사, 12월.
- 이기호, 설성수 (근간), “무형자산 관련 가치평가 기준 비교분석”.
- 이병민, 이기호 (2000), “기술가치평가사의 기능 및 역할”, 『기술혁신학회지』, 3-2호, 14-32.
- 조성표 (2000), “지식자본시대 회계의 과제: 무형자산의 측정과 보고”, 『회계저널』, 9-2, 135-163.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1),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3.1호, “무형 자산”, 7. 20.
- Högh-Krohn, Nils E., Kjell Joachim (2000), “Accounting for Intangible Assets in Scandinavia, the UK, the US, and by the IASC: Challenges and a Solu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Vol.35, No.2, 243-265.
- Kaplan, R., D. Norton(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A Set of Facts and Figures*, 1999.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Bench Marking Knowledge-based Economies, 1999*, OECD, Paris.
- Sawhney, M., R. Gulati, A. Paoni(2001), “New Economy Matrics - Measuring Intellectual Capital”, *TechVenture : New Rules on Value and Profit from Silicon Valley*, Ch. 5., John Wiley & Sons.